# 8.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

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톨릭꽃 동네대학교(이하 '본교')에서 대학 국가 근로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 (2021.6.22. 개정)
- 제2조(명칭)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'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국가근로장학 제도'(이하 '본 제도')'라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## 제2장 예산의 운용과 지원금 교부

- 제3조(예산의 규모) 본 제도는 교육부 장관이 본교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본교 지원금의 25%이 상을 대응투자한 금액을 예산으로 운영한다.
- 제4조(국고지원금의 관리) ① 제3조의 예산은 본교의 총 예산에 포함하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.
  - ② 제3조의 예산 집행 실태는 반기별 또는 회계별로 국가근로장학금 집행 실태 및 집행 완료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#### 제3장 근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

- 제5조(근로장학생 선정 기준) ①본 제도의 수혜대상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.
  - 1.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
  - 2.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차상위계층
  - 3. 가족의 연간 소득이 "세대당 평균소득"에 미달하는 자
  - 4. 가족의 연간 소득이 "세대당 평균소득"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(다만, 이 경우는 배정인원의 30%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.)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"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"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  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, 교수추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.
  - ④본교의 교·내외 장학제도에 의해 수업료 면제·감액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한다.
- 제6조(근로 장소) ①본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로 한다.
  - 1. 전공 관련시설: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, 공공기관 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시험·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, 사회복지시설(장애자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), 의료시설 등의 교·내외 시설
  - 2. 비전공 시설 : 저소득층 학생지원 시설(사업)
  - ②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

근로를 하지 않도록 한다.

- 제7조(근로장학생 선정 절차) ①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및 사회봉사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장학생 신청 공고를 한다.
  - ②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 ③근로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.
  - ④전공 관련시설 중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에서 근로 하는 학생을 10%이상 선정, 집행하도록 한다.

## 제8조(근로기간 및 시간)

- ①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은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,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. 다만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.
- 제9조(지원금액 산정) ①근로장학생의 시간급 지원금액은 교육부의 규정에 의한다.
  - ②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, 매월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가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- ③근로장학생의 자원에 의하여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.

### 제4장 근로장학사업의 운영

- 제10조(대학의 근로장학사업 운영) ① 학생지원처는 선발 절차 등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근로장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. (2019.2.8.개정)
  - ②근로장학사업 운영 전담자는 근로장학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상황 점검 등을 한다.
- 제11조(기타)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육부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